■ 건축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서식] <개정 2020. 6. 18.>

[ ]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
[ ]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
[ ]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

접수번호	접 수 일	실명확인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:)	
	자격번호	자격 취득일

근무처	사무소명	신고번호
	대 표 자	신고 구분 [ ] 개 인 [ ] 법 인 [ ] 엔지니어링사업자 [ ] 건설사업자
	소 재 지 (전화번호:)	

재발급 사 유 (구체적으로 적습니다)	

「건축사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 ]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, [ ]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, [ ]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 별 시 장
광 역 시 장 귀하
도 지 사
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	수수료
	없음	2천원

수입증지(2천원) 붙이는 곳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접 수	확 인	검토 및 결재	신고확인증 작성	신고확인증 재발급
신청인	시·도지사	시·도지사	시·도지사	시·도지사	시·도지사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